

2005. 6.

수신 : 제천시의회 의장

원복

제목 :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증개정~~ 조례안 발의

위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의회 제112회 제1차 정례회에 불임과 같이 발의
합니다.

불임 1. 발의 의원 서명서 1부

원복

2.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증개정~~ 조례안 1부

발의자 : 이동수 의원(인) 3
외 3인

이동수

(찬성자 서명서 별첨)

선 결	의장	○	결재	부의장	○
집무일시	2005. 6. 13. 시	월	부 (공 관)	국장	○
처리과	제천시의회	기록과	담당	○	○

일부
제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

의원성명	서명또는날인	비고
윤 성업		
김자경		
김명숙		
이종우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11
------	------

발의연월일 2005. 6.
발의자 이동수의원외 3인

1. 제안사유

2005. 1. 2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41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정례회에 회의일자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3조 (회기)

-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년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조항 전부 삭제

※ “제4조”를 “제3조”로, “제5조”를 “제4조”로, 제6조”를 “제5조”로 함.

붙임 1)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삭제 한다.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삭제)
<u>제4조(생략)</u>	<u>제3조(생략)</u>
<u>제5조(생략)</u>	<u>제4조(생략)</u>
<u>제6조(생략)</u>	<u>제5조(생략)</u>

제1편 의회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2000. 3. 30] [조례 제451호]

개정 2001. 3. 16 조례 제513호
개정 2004. 4. 9 조례 제63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 경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치방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의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01. 8. 16, 2004. 4. 9>
-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1월 26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4. 4. 9>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4. 4. 9>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4. 4. 9>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의회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8. 16 조례 제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 9 조례 제6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

지방자치법

제4절 소집과 회기

제38조 (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8.31]

제39조 (임시회) ① 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1994.3.16>

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회의 소집은 시·도에 있어서는 집회일 7일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 삭제 <2005.1.27>

③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2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9.12.30. 1994.3.16. 1999.8.31>

제4절 소집과 회기

제38조 (정례회)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8.31]

제39조 (임시회) ①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개정 1994.3.16>

②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임시회의 소집은 시·도에 있어서는 집회일 7일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개회·폐회와 회의일수) ①지방의회의 개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시·도의회의 경우 40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1991.12.31, 1994.3.16, 1999.8.31>

③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2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4.3.16, 1999.8.31>